



의안번호	제 2013 - 10호
보 고 연 월 일	2013. 4. 22. (제48차 정기회의)

보  
고  
안  
건

## 전문위원 업무보고

제 출 자	수석전문위원
-------	--------





# 목 차

I. 제67차 전체 회의 .....	1
1. 일시·장소 .....	1
2. 참석자 .....	1
3. 주요 안건 .....	1
4. 회의 요지 .....	1
II. 향후 일정 .....	8

## <별첨자료>

- 최승원, “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”
  - 최승원, “살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 검토”
  - 최승원, “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(III)”
  - 주용완, 조석영, “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검토”
  - 함석천, “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”
  - 함석천, “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”
  - 함석천, “성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”
  - 주용완, 조석영, “제67차 전문위원단 회의 자료 - 성범죄”
  - 수석전문위원, “이광수, 이상원 위원 요청 자료 제출”
-

# I. 제67차 전체회의

## 1. 일시·장소

- 일시 : 2013. 4. 15.(월) 14:00 ~ 17:00
- 장소 : 대법원 1601호 회의실

## 2. 참석자(11명)

- 수석전문위원, 김혜정, 이수정, 이주원, 이진국, 조석영, 주용완, 최승원, 최진녕, 함석천 전문위원
- 운영지원단장(간사)

## 3. 주요 안건

-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

## 4. 회의 요지

### 가.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

#### (1) 권고 형량범위

- 권고 형량범위 수정에 관하여 제2 내지 제5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향 방안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, 제1유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나뉘
- 다수의견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, 소수의견은 지난 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유형도 형량범위를 일부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 수정안을 변경하자는 의견이었음

#### (a) 다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유지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참작 동기 살인	3년 - 5년	4년 - 6년	5년 - 8년
2	보통 동기 살인	7년 - 12년	10년 - 16년	15년 이상, 무기 이상
3	비난 동기 살인	10년 - 16년	15년 - 20년	18년 이상, 무기 이상
4	중대범죄 결합 살인	17년 - 22년	20년 이상, 무기	25년 이상, 무기 이상
5	극단적 인명경시 살인	20년 - 25년	23년 이상, 무기	무기 이상

(b) 소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변경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참작 동기 살인	3년 - 6년	5년 - 8년	6년 - 10년
2	보통 동기 살인	7년 - 12년	10년 - 16년	15년 이상, 무기 이상
3	비난 동기 살인	10년 - 16년	15년 - 20년	18년 이상, 무기 이상
4	중대범죄 결합 살인	17년 - 22년	20년 이상, 무기	25년 이상, 무기 이상
5	극단적 인명경시 살인	20년 - 25년	23년 이상, 무기	무기 이상

(2) '유형의 정의' 부분

(가) 제1유형의 '유형의 정의'에 추가된 예시 부분 수정

- 현행 양형기준안에서 제1유형의 '유형의 정의' 중 예시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의 표현이 자칫하면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되는 예시 부분의 표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

■ 바관 등에 의한 친족 살인책임조각사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

- 삶을 바관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 자녀 등 친족을 살해한 경우
-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거나 치료의 가망이 없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는 가족을 살해한 경우

(나) 제1유형의 '유형의 정의' 중 기존의 예시 부분 수정

- 양형기준은 제1유형의 '유형의 정의'의 예시인 '피해자의 귀책사유

있는 살인'과 관련하여 “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, 성폭력, 스토킹(stalking) 등 지속적인 육체적·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”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- 그러나, ‘스토킹(stalking)’은 가정폭력, 성폭력 등과 같이 살인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도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큰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, 이를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

■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

-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, 성폭행, 스토킹(stalking) 등 지속적인 육체적·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
-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(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)

(다) 제4유형의 ‘유형의 정의’ 부분

- 2013. 6. 19. 시행될 개정 형법은 유사강간죄(형법 제297조의2) 및 유사강간살인죄(형법 제301조의2)를 신설함
- 그런데, 살인범죄 제4유형(중대범죄 결합 살인)의 유형의 정의 부분에는 강간 등 살인과 관련하여 ‘강간살인/강제추행살인(형법 제301조의2, 성폭법 제9조 제1항,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)’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, 신설된 유사강간살인을 추가하여 ‘강간살인/유사강간살인/강제추행살인(형법 제301조의2, 성폭법 제9조 제1항, 아동·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)’으로 유형의 정의를 수정하기로 의견 일치

(3) 양형인자

(가) ‘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·유인인 경우’의 수정

- 살인범죄 양형기준은 형법 및 특가법상 약취·유인죄의 구성요건상 ‘목적’인 ‘재물 취득 목적’, ‘살해 목적’, ‘추행·간음·영리 목적’, ‘추

업사용 목적', '국외이송 목적' 등을 차용하여 특별가중인자인 '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·유인인 경우'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

- 그런데, 2013. 4. 5. 형법 개정으로 '추업사용 목적' 약취·유인 등 죄가 삭제되고, '노동력 착취, 성매매와 성적 착취, 장기적출의 목적' 약취·유인 등 죄가 신설되었음
- 따라서,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'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·유인인 경우'의 예시에서 "추업사용 목적"을 삭제하고, "노동력 착취, 성매매와 성적 착취, 장기적출의 목적"을 추가하기로 의견 일치

#### 6.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·유인인 경우

- 약취·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살해 목적인 경우
  -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
  - 추행·간음·영리 목적인 경우
  - ~~추업사용 목적인 경우~~
  - 노동력 착취, 성매매와 성적 착취,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
  -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

#### (4) 권고 형량범위 특별조정에 관한 설명 부분

-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에 관한 설명 부분의 제1항 단서인 "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."는 부분은 양형기준이 현재의 안과 같이 수정되면 더 이상 적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, 이를 삭제하기로 의견 일치

나.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

(1) 권고 형량범위

(가) 강간죄(13세 이상) 중 제3유형(강도강간)

- 강간죄(13세 이상) 중 제3유형(강도강간)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견해가 나뉨
- 다수의견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일부 반영하여 양형기준 수정안을 일부 변경하자는 의견이고, 소수의견은 현행 양형기준 수정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임

(a) 다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변경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주거침입 등 강간 /특수강간	3년 - 5년6월	5년 - 8년	6년 - 9년
3	강도강간	5년 - 8년 5년 - 9년	7년 - 10년 8년 - 12년	9년 - 13년 10년 - 15년

(b) 소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유지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간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7년
2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/주거침입 등 강간 /특수강간	3년 - 5년6월	5년 - 8년	6년 - 9년
3	강도강간	5년 - 8년 6년 - 10년	7년 - 10년 9년 - 13년	9년 - 13년 12년 - 17년

(나) ‘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’ 중 ‘13세 이상 대상 상해/치상’ 부분

- 형량범위표(현행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일반강제추행	2년6월 - 4년	3년 - 5년	4년 - 6년
2	일반강간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3	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	3년6월 - 6년	5년 - 8년	7년 - 10년
4	친족관계에 의한 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5	주거침입 등 강제추행/특수강제추행	5년 - 8년	7년 - 11년	10년 - 14년
6	주거침입 등 강간/특수강간	6년 - 9년	8년 - 13년	12년 - 16년

- 신설된 성년 유사강간, 법정형이 변경된 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, 청소년 유사강간/위계·위력유사성교, 청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었음

(a) 다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유지)

-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은 물론이고 기본범죄의 내용과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성년 유사강간과 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은 2유형에, 청소년 유사강간/위계·위력유사성교, 청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은 3유형에 각 포함시키자는 의견

(b) 소수의견(양형기준 수정안 변경)

- 상해가 발생한 범죄 자체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, 청소년 강제추행/위계·위력추행은 3유형에, 청소년 유사강간/위계·위력유사성교, 청소년 강간/위계·위력간음은 4유형에 각 포함시키자는 의견

(다) ‘장애인(13세 이상) 대상 성범죄’ 중 위계·위력추행, 위계·위력유사성교, 위계·위력간음 부분

- 형량범위표(양형기준 수정안)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의제추행	- 10월	8월 - 2년	1년6월 - 3년
2	의제간음/강제추행	1년6월 - 3년	2년6월 - 5년	4년 - 6년
3	<b>유사강간</b> 강제유사성교	2년6월 - 5년	4년 - 7년	6년 - 9년
4	강간	4년 - 7년	6년 - 9년	8년 - 12년

● 위계·위력추행은 2유형(다만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/2로 감경)에, 위계·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, 위계·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함

○ 양형기준 수정안에서는 장애인 대상 위계·위력유사성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서술식 기준 중 ‘위계·위력유사성교’ 부분을 삭제하였으나, 위 서술식 기준은 위계·위력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중 추행의 정도가 유사강간에 준하는 경우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,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

○ 그러나, ‘위계·위력유사성교’와 ‘위계·위력간음’의 권고 형량범위에 관한 서술식 기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었음

(a) 다수의견(서술식 기준 수정)

-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폭행·협박이 수반된 강간(7년 이상)/유사강간(5년 이상)과 위계·위력간음(5년 이상)/위계·위력유사성교(1년 이상)가 법정형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식 기준을 수정하자는 의견

● 위계·위력추행은 2유형(다만,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/2로 감경)에, 위계·위력유사성교는 23유형에, 위계·위력간음은 34유형에 포함

(b) 소수의견(서술식 기준 유지)

- 폭행·협박이 수반된 강간/유사강간과 위계·위력간음/위계·위력유사성교가 법정형이 다르기는 하나,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행·협박이 수반된 경우와 위계·위력에 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

## II. 향후 일정

- 전문위원 제68차 전체회의는 추후 개최하기로 함